

1. 개정이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8062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안전장비 배치 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기준 신설 (안 제6조의 2)

법률의 개정으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규정 신설되어 위탁기관 지정 기준, 신청서 제출, 지정서 발급,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등의 사고발생 시 신고 방법 신설 (안 제7조제5항)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체험활동 중 사고발생 시 신고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동법 위임규정 근거하여 사고발생 시 신고 방법을 신설함

다.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 규정 삭제 (현행 제8조 삭제)

법률의 개정으로 종교단체가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법 위임규정(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 활동)을 삭제함

라. 민간연안순찰요원 명칭 변경 (안 제11조)

‘민간연안순찰요원’의 명칭을 쉽고 부르기 쉬운 ‘연안안전지킴이’로
변경함

마.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구명조끼 배치기준 개선(제6조4항 별표3의3)

국민의 안전한 연안체험활동을 위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구명조끼
배치기준을 안전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4」, 「별표 5」,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3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의2제1항”으로, “이수하여야”를 “이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교육 1시간당 8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안전교육 수수료)”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및 취소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장 시설 명세서

2.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⑥ 위탁기관은 위탁기관 지정취소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위탁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관리하여야”를 “작성·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1. 사고 발생의 날짜, 시간 및 장소

2. 체험활동의 유형 및 참가자 수

3.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을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연안순찰요원(이하 “민간연안순찰요원”이라 한다)은”을 “연안안전지킴이(이하“연안안전지킴이”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연안순찰요원”을 “연안안전지킴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22연안순찰대원”을 “연안순찰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민간연안순찰요원”을 각각 “연안안전지킴이”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2) 전단 중 “참가자”를 “참가자를 성인, 소아로 구분하여 각각”으로, “것.”를 “것”으로 하고, 같은 2)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2) 전단 중 “참가자”를 “참가자를 성인, 소아로 구분하여 각각”으로, “것.”를 “것”으로 하고, 같은 2)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제6조제4항 관련)

1.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 가. 일반형 체험활동: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나. 수상형 체험활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자격을 갖춘 자
- 다. 수중형 체험활동: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중 관련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

- 가. 수상형 체험활동: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할 것. 이 경우 비상구조선마다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 나. 수중형 체험활동: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8명 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할 것. 이 경우 비상구조선마다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 다. 일반형 체험활동: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20명 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할 것

3. 안전장비의 종류 및 배치기준

가. 수상형 체험활동

- 1) 비상구조선(무동력 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탑승정원이 연안 체험활동 참가자 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인 비상구조선을 갖추는 것
- 2) 구명조끼(구명자켓 또는 구명슈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성인, 소아로 구분하여 각각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는 것
- 3) 구명튜브: 1개 이상의 구명튜브를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구명튜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는 것
- 4)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구명줄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는 것
- 5) 구급장비: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갖추는 것

나. 수중형 체험활동

- 1) 비상구조선: 탑승정원이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인 비상구조선을 갖추는 것
- 2) 구명조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성인, 소아로 구분하여 각각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는 것
- 3) 구명튜브: 1개 이상의 구명튜브를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구명튜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는 것
- 4)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5명 당 구명줄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는 것
- 5) 구급장비: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갖추는 것

다. 일반형 체험활동

- 1) 구명튜브: 1개 이상의 구명튜브를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20명 당 구명튜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는 것
- 2)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20명 당 구명줄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는 것
- 3) 구급장비: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갖추는 것

비 고

1. 안전장비는 연안체험활동 중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선박에 승선하여 연안체험활동을 하는 때에는 그 선박을 비상구조선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제3호나목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기준

1. 인적기준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업무에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의 안전교육 강사 2명 이상

가. 일반형·수상형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의 자격기준 등)에 의한 강사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고시 하는 수중 관련 단체에서 발급하는 강사(지도자)자격을 갖춘 사람

2. 시설·설비기준

구 분	기 준
안전교육장	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5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
행정실	10제곱미터 이상
화장실	남·여 구분
주차장	승용차 10대 이상 주차 가능

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

(제6조2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다.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	지정 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신청 기관·단체	명칭	(전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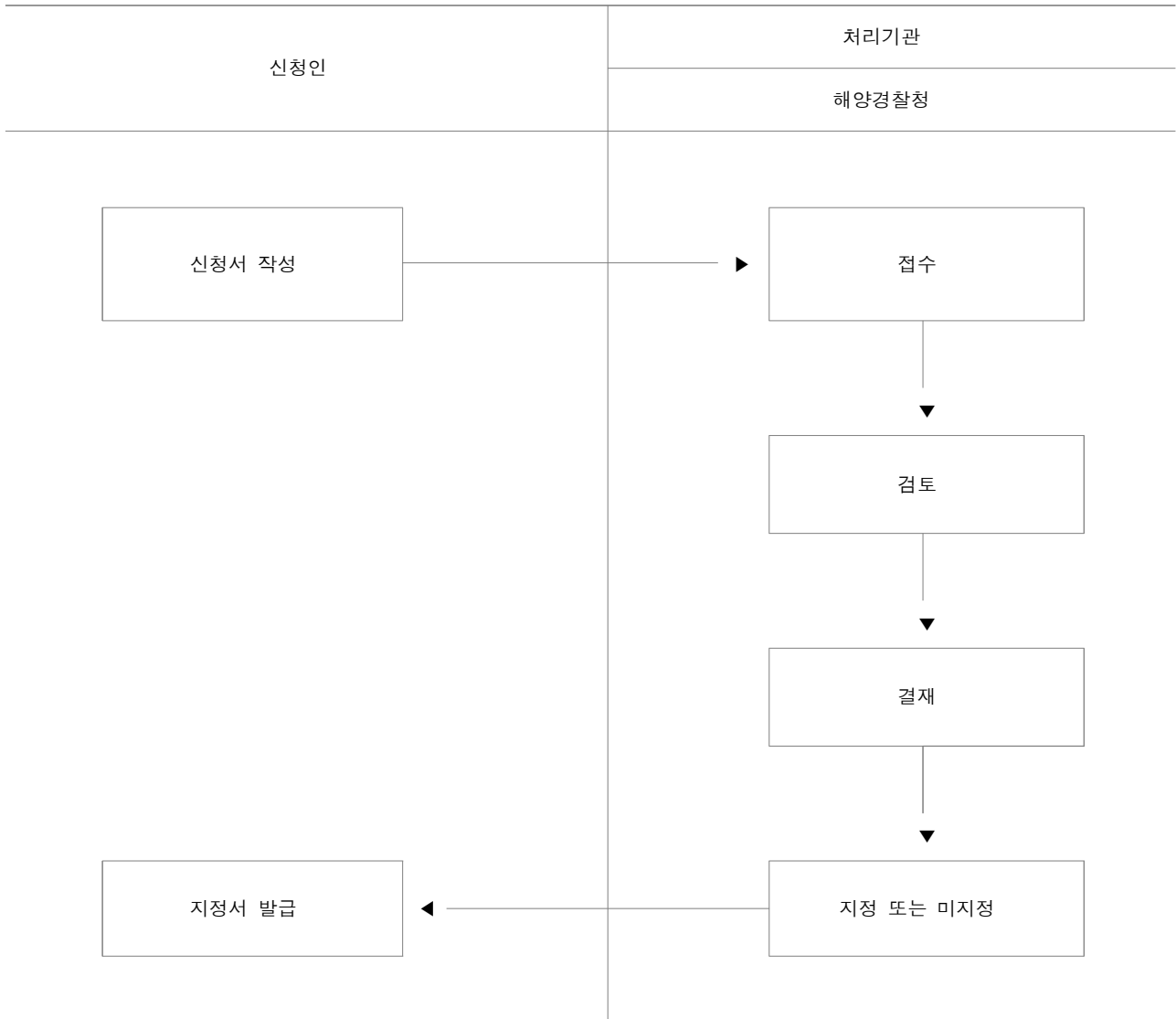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장 시설 명세서 2.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

안전교육 위탁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기관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2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 지정취소
[] 업무정지 통지서

기관 · 단체	상호(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정일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 기간)	
사유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2제4항에 따라 연안 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지정취소 ☐업무정지)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위탁기관 지정취소 된 경우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년 월 일
까지 해양경찰청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u>수립하여야</u> 한다.	제3조(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 ----- ----- ----- ----- <u>수립해야</u>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출입통제장소의 지정·해제)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하거나 출입통제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출입통제 개시일 또는 출입통제 해제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해당 장소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u>설치하여야</u> 하고, 해당 해양경찰서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u>공고하여야</u> 한다.	제5조(출입통제장소의 지정·해제) ----- ----- ----- ----- ----- ----- ----- ----- ----- <u>설치해야</u> ----- ----- -- <u>공고해야</u>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등) ① (생략)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 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사람(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을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설>

안전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의2제1항-----

----- 이수해야 -----

-----.

③ -----

----- 제출해야 -----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1조2의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교육 1시간당 8천원의 수수료

제6조의2(안전교육 수수료) 법 제 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교육 1시간당 8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및 취소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장 시설 명세서
2.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 설>

<신 설>

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①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⑤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취소·업
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⑥ 위탁기관은 위탁기관 지정취소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위탁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① -----

제출해야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세부 현황 및 안전관리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기 어려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신고된 기간 동안 실시되는 각각의 연안체험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②

현장체험활동 건별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 시작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를 수리한 경우(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 제출해야 ----.

③

-- 제출해야 ----.

④

-- 작성 · 관리해야 ----.

⑤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사고
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팩스

제8조(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안체험활동을 말한다.

1.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20명 이상인 수상형 체험활동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0명 이상인 수중형 체험활동

제10조(시정명령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명령서에 그 이유와 시정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1. 사고 발생의 날짜, 시간 및 장소
2. 체험활동의 유형 및 참가자 수
3.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삭 제>

제10조(시정명령 등) ① -----

--- 교부해야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즉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정완료 보고서에 시정 완료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 방법 및 활동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연안순찰요원(이하 “민간연안순찰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1. ~ 3. (생략)

② 민간연안순찰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122연안순찰대원 임무의 보조·지원

2.·3. (생략)

③ 해양경찰청장은 민간연안순찰요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

② -----

----- 이행해야 -----

----- 제출해야 -----.

제11조(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 방법 및 활동범위 등) ① -----
----- 연안안전지킴이
이(이하“연안안전지킴이”라 한다)는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연안안전지킴이-----
-----.

1. ----- 연안순찰대원 -----

2.·3. (현행과 같음)

③ ----- 연안안전지킴이
이-----

급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u>민간연안순찰요원</u>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⑤ 그 밖에 <u>민간연안순찰요원</u>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1. 삭제 2.·3. (생략)	-----. ④ ----- <u>연안안전지킴이</u>----- ----- ----- -----. 1. ~ 4. (현행과 같음) ⑤ ----- <u>연안안전지킴이</u>----- -----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u>해야</u> ----- --. 2.·3. (현행과 같음)
--	--